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(민홍철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1294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9. 10.

발 의 자 : 민홍철 · 허성무 · 이주희
문대림 · 임호선 · 백혜련
정준호 · 박홍배 · 박용갑
김문수 · 한정애 · 손명수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산후조리원이 갑작스럽게 폐업하면서 이용자로부터 받은 계약금 등의 선불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였음.

그런데 현행법은 산후조리업을 폐업·휴업하려면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을 규정하고 있을 뿐, 폐업·휴업 신고 시 선불금의 정산·반환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거나 선불금의 정산·반환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근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산후조리원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어려운 실정임.

이에 산후조리업의 폐업·휴업 신고 시 이용요금 중 미이용분의 정산·반환 내역을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, 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정산·반환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폐업·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며, 폐업·휴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해당 신고가 수

리되지 않았음에도 폐업·휴업을 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이를
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산후조리원 폐업·휴업 시 이용자가 선불
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15조의10제2항·
제3항 신설 및 제23조제1항 등).

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의10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에 따라 폐업·휴업 신고를 하려는 경우 이용요금(계약금·선불금을 포함한다) 중 미이용분의 정산·환불 내역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후조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정산·환불 내역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정산·환불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폐업·휴업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23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의2. 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 산후조리업의 폐업·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폐업·휴업 또는 재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산후조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

제27조제2항제3호 중 “제15조의10”을 “제15조의10제1항”으로, “아니한”을 “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폐업·휴업 또는 재개하거나 같은 조 제3

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산후조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폐업·휴업 신고에 관한 적용례) 제15조의10 및 제2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산후조리업의 폐업·휴업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5조의10(산후조리업의 폐업· 휴업 및 재개의 신고) (생 략)	제15조의10(산후조리업의 폐업· 휴업 및 재개의 신고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<u><신 설></u>	<u>② 산후조리업자가 제1항에 따</u> <u>라 폐업·휴업 신고를 하려는</u> <u>경우 이용요금(계약금·선불금</u> <u>을 포함한다) 중 미이용분의</u> <u>정산·환불 내역을 함께 제출</u> <u>하여야 한다.</u>
<u><신 설></u>	<u>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</u> <u>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</u> <u>은 산후조리업자가 제2항에 따</u> <u>른 정산·환불 내역을 제출하</u> <u>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정산·</u> <u>환불 내역이 적절하지 아니하</u> <u>면 제1항에 따른 폐업·휴업</u> <u>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</u> <u>다.</u>
제23조(위반사실 등의 공표) ①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산 후조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여 그 처분이	제23조(위반사실 등의 공표) ① - ----- ----- ----- -----

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위반사실, 처분내용, 해당 산후조리원의 명칭 및 주소, 산후조리업자의 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명을 말한다),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공표할 수 있다.

1. 2. (생략)

<신설>

3. 4. (생략)

② ③ (생략)

제27조(과태료) ① (생략)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1. 2. (생략)

3. 제15조의10을 위반하여 산후조리업의 폐업·휴업 또는 재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2의2. 제15조의10제1항에 따른

산후조리업의 폐업·휴업 또는 재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폐업·휴업 또는 재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산후조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여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

3. 4. (현행과 같음)

② ③ (현행과 같음)

제27조(과태료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3. 제15조의10제1항-----

개를 신고하지 <u>아니한</u> 산후조리업자	-----<u>아니하고 산후조리업을 폐업·휴업 또는 재개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산후조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한</u>-----
4. ~ 6. (생략) ③ (생략)	4. ~ 6.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